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22

발의연월일: 2021. 2. 22.

발 의 자:김영진·최종윤·인재근

정춘숙・허 영・강득구

김수흥 • 이용선 • 장경태

이원욱 의원(10인)

제안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 0.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현 시대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등 체계화 및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며,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체계적인 어구관리를 위해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실명제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 관련 업종을 신설하며, 일정기간 동안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발령하여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명령 근거를 도입하는 등 어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정합성 제고(안 제1조, 제2조)
 - 1) 현 시대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하며,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함.
 - 2)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수산관계법령의 기본 법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함.
- 나. 신고어업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 제27조, 제48조, 제50조)
 - 1) 현행 신고어업의 종류에 맞춰 관련 조항에서 어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 2) 신고어업 대상을 명확화하고 거주 요건을 추가하며, 어업분쟁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신고어업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신고어업도 면허·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 지되도록 규정함.
- 다. 어구관리 강화(안 제60조, 안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 1)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 2)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3)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유통·사용·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4)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제도를 법제화함.
- 5) 일정기간 동안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내려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함.
- 6)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폐어구 집하장 설치, 폐어구 수거 ㆍ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함.
- 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안 제82조, 제83조)
 - 1)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 어획량 제한을 포함한 연안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경우 어구·어법을 일부 달리 적용하거 나 연근해 조업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마.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확대(안 제99조)

- 1)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 별·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함.
- 2) 어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어획물운반업자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등을 보고하게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의 장 및 중앙회장에게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바. 기타 제도개선(안 제36조, 제45조, 제92조, 제98조)

- 1) 마을어업권의 행사 자격을 어촌계 관할 구역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완화함.
- 어업허가의 지위 승계 대상 중 경매를 매입의 일종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3) 수산조정위원회에 사전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함.
- 4) 수산물 양육 및 매매장소의 지정 취소 등 경우에도 청문 절차를 의무화함.

사. 벌칙, 과태료 조항 보완

1) 어구실명제 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벌칙 조항을 보완함.

2) 과태료 구간의 세분화 및 어구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보완함.

법률 제 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

- 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 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 7.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8.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 9. "입어자"란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 11.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3.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14.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5.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16.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 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 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17.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18.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 19.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바다
 - 2. 바닷가

-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 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 의 수립·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 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국(自國)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안 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해서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 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 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본다.
- 제7조(공동신청)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덧붙여적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 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2장 면허어업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

- 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 는 어업
-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 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 4. 어선・어구(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

- 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 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 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 3.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 수면이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3조(우선순위) ① 어업면허(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 1.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 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 2. 수산기술자로서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 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② 제1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 1. 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던 자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군·자치구와 연접(連接)하는
 시·군·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④ 제9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

- 다. 이 경우 제91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1.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2.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 3.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 4. 제8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 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 거나 보상받은 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 권을 이전·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 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5항 각 호 및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

- 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

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 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 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 로 한다.
- 제17조(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 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入 漁)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1.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 2.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 (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있다.

-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그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 제23조(공유자의 동의) ①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 •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 제26조(어업권의 경매) ①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8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③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 ④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

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0조나 제48조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보호구역) ①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

역을 둔다.

-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 2.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 3. 통발 또는 연승(延繩) 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및 잠수 기를 사용하는 어업
- 4.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권과 바닥식양식어업권이 설정된 어장 주변에 다른 어업과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 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보호구역에서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근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 2. 그 밖에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어업
- ⑤ 제1항 및 제3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 ④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어업의 개시 등) ①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繁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 1. 수산자원의 증식 ·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 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 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제8호나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 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 2.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 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 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 3.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 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어촌계원별·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9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

- 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入漁者)에 게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 ③ 제12조 또는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0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 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어업의 종류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 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 체
-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 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34조제1호 · 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 · 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①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55조제1항제3 호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3.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 가 취소되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 1.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
- 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3. 신청한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 4. 신청한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신청한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 에 종사한 자
- ④ 제3항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어업경 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관청이 정한다.
- ⑤ 그 밖에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혼획의 관리) ① 어업인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수 있다.

-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 2.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 3. 혼획의 허용 범위
- ② 어업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범위를 넘어서 포획·채취하거나 포획·채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 장소를 이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어업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낙도・벽지(僻地) 등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 가 없는 경우
- 2. 혼획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이하인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획물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한시어업허가) ① 시·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 1. 어업의 종류(이 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종류에 한한다)
 - 2.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총량
 - 3. 해역의 범위
 - 4. 조업의 기간(연간 3개월 이내. 다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및 시기, 척수
 - 5.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척당 어획량 할당 및 관리
 - ② 시·도지사는 한시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어

선 또는 어구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겸업(兼業)으로 허가하여야한다.

-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 2.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 으로 하는 어업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시어업의 승인, 허가대상 및 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① 행정관청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처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제33조제1항제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 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 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 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 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46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① 제8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 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8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8조·제40조·제43조 및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 · 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48조(신고어업) ① 제8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 3.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 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공

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 2. 제7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 ·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 ① 제40조·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 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 ②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장 어획물운반업

- 제51조(어획물운반업 등록)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된다.
 - 1.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산 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 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 가. 제8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 ·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 조, 제48조제1항 · 제4항 · 제6항, 제55조, 제63조
 - 나.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

조제1항 및 제34조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6호

- 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 3.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
 ·제7호, 제34조제1호, 제49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 4.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44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 5.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54조(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29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 제3호·제7호,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제 44조.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5장 어업조정 등

-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할 수 있다.
 - 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 3. 근해어업의 허가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 이나 금지
 - 4. 어업자 · 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 7.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 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광역시·도·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 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 조정의 합의에 대하여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조업기간·조업척수(操業隻數)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① 제40조제4항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8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91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①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 ②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선령·기관, 부속선의 수·규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 체에 소속된 어업자
 - 2.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소속된 어업인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어구의 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91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어구의 사용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지장이 있는 지 여부
- 2.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 제61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가 어구의 규모등에 적합한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어구의 규모등에 대해서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및 확인 결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

다.

- 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 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 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 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 (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 1. 제3항에 따른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 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 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⑤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

- 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는 제8조·제40조·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 로 정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이 제5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3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따라야 한다.
-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

- 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도지사가, 면허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어구·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어구·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 ④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어구·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7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의 명령과 처분이,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관청은 수산시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 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제69조(어업감독 공무원)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 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제거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및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과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70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 제71조(어구생산업 및 판매업의 신고) ①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이하 "어구생산업"이라 한다)을 업으로하려는 자(이하 "어구생산업자"라 한다)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수입하여 유통·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구판매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판매업자"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업무를 폐업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

- 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 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 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 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① 어구생산업자 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어구생산업자 등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3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등을 신고한 경우
- 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3. 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4. 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 5.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를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 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제74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판매방법등을 제한할 수 있다.
 - 1. 수산자원의 증식 ·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어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절,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판매방법 등의 제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75조(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유통·사용·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처 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어구생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76조(어구실명제) ① 어업인은 어업 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이하 "수면"이라 한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7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 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91조 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 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 제40조, 제43조및 제4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

- 그 대상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거나 제50조에서 준용되는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어구 수거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역 여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행정관청은 제3항에 따른 어구 수거 기간 동안 수거되지 아니한 어구를 제78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 제한 절차, 어구 수거 명령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① 행정관청은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하여 처리·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측정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을 소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또는 보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① 행정관청은 폐어구 및 유실어 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이하 "집하장 등"이라 한다)를 설치·유영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하장등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③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80조(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 등) ①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하장등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 주변 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장 수산업의 육성

- 제81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82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 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의 일부를 달리 적

- 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1조에 따른 중앙수 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내용 및 그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83조(시·도 연안자원관리) ①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역 내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 2.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서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 업종별 또는 어종별 조업경계선
 - ② 시·도지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경우 시·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 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사항 및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상·보조 및 재결

- 제84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다.
 -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0조제1항과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 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

-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5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 2. 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 ②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86조(보상금의 공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 제87조(입어에 관한 재결)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91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 제88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때에는 제91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9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90조(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 제91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 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 제92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어업별 분쟁의 사전·사후조정
 - 2.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 3. 기본계획의 심의
 -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 6.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 7.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②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 · 조정
- 2.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 3.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4. 시행계획의 심의
- 5.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 7. 시 ·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③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 2. 개발계획의 심의
- 3.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 7.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91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3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91조에 따른 수산조정위 원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
- ⑥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 제94조(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8호·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95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褒賞)할수 있다.
- 제9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7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98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 업의 취소
 - 3.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 4. 제52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 5.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 6. 제62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 7. 제73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의 폐쇄
- 제99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

- 제10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 2.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 3.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 반한 자

- 4.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4 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2. 제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 3. 제27조제1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
 - 4. 제27조제4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 5. 제31조제1항(제50조제1항이나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 6.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 7.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혼획한 자

- 8.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 9. 제55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자
 -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행위 를 한 자
 - 3. 제33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 4.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자
 - 5.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6.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 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 3.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않은 자
- 제105조(몰수) ①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제3호·제5호 및 제104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10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0조제1항(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 정기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 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 2. 제45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 3. 제49조제3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 5. 제38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어업권자
- 6.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
- 7.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 8. 제48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 9. 제49조제1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 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 10. 제69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 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 11.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 하거나 방해한 자
- 1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자
- 13. 제73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 2. 제4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

- 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 3. 제50조제1항 또는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 4. 제65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 5.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 나 어장·어선 및 어구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 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훼손·제거한 자
- 8.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9.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0. 제92조제5항에 따른 질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 11. 제9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 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3조"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56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각각 "「수

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같은 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91조"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를 "제8 조·제40조·제43조·제46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제40조제1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45조제3항" 을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8조"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제70조, 제81조 및 제83조"를 "제67조, 제84조 및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6조 및 제87조"를 "제89조 및 제90조"로 한다.

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4조부터 제90조"로 한다.

⑦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4조"로 한다.

⑧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⑨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4조부터 제90조"로 한다.

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4조부터 제90조"로 한다.

②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수산업법」 제59조"를"「수산업법」 제53조"로 한다.

(A)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8조 제1항"으로 한다.

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수산업법」 제9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단서 중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을 각각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⑩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를 "같은 법 제40 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⑰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⑧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수산업법」 제91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같은 법 제49조" 를 "제34조(같은 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제66 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43조·제48조·제63조"로 한다.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 중"「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1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41조 및 제61조"를 "제40조 및 제55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수산업법」 제86조"를"「수산업법」 제89조"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②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76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으로,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 9조제4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 항. 제40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 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9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사항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정할 수 있다.

제291조제3항 중"「수산업법」 제88조"를"「수산업법」 제91조"로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하며, 제2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4조부터 제90조"로 한다.

2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같은 법 제47조"

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4조"로 한다.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②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7조"를 "「수산업법」 제8조·제40조·제48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